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21가단500845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샘
담당변호사 서경원

피 고 1. 망 A의 소송수계인 B
2. 망 A의 소송수계인 C
3. 망 A의 소송수계인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래스
담당변호사 이재성
변 론 종 결 2022. 11. 4.
판 결 선 고 2022. 11. 2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E과 망 A 사이의 2016. 3. 28.자 150,000,000원 금전지급행위를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은 64,285,714원, 피고 C, D은 각 42,857,14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2009. 2. 23. 원고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으로부터 5억 원의 일반자금대출을 받음에 있어 보증기한을 2010. 2. 22., 보증금액을 4억 7,500만 원으로 정하여 F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의 보증기한 및 보증금액은 순차적으로 변경되어 보증기한은 2017. 2. 17., 보증금액은 2억 4,000만 원으로 각 변경되었다.), F의 대표이사였던 E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으로부터 발생하는 F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2016. 4. 1. F는 당좌부도로 부실처리되는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그에 따라 원고가 F를 대위하여 G에 대위변제한 금액은 합계 485,680,845원이었으며, 원고는 2016. 6. 22. 7,738,187원, 2017. 9. 11. 7,420원 합계 7,745,607원을 환수하였고, 그에 관한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또한 원고의 확정손해금은 3,028원이고, 대지급금은 103,800원이다.

보증번호	H	I	J	K
대위변제금액	242,093,704	189,179,996	27,352,946	27,054,199
환수금액	7,745,607			
잔액	234,348,097	189,179,996	27,352,946	27,054,199

다. A은 2015. 5. 13. 200,000,000원, 2015. 11. 27. 400,000,000원을 E과 F에게 대여하였고, 2016. 3. 23. E은 A에게 150,000,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20장(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 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을 교부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2016. 3. 28.자 150,000,000원 금전지급행위’라 한다.), 2016. 4. 6. 피고는 위와 같이 수령한 자기앞수표 20장을 주식회사 L에 지급제시한 후 지급받은 150,000,000원을 자신 명의의 위 L의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하였다.

라. A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22. 5. 19. 사망하였는데(이하 ‘망 A’이라 한다.) 망 A의 상속인으로는 처 B, 자인 C, D이 존재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내지 2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2016. 3. 28.자 150,000,000원 금전지급행위는 증여이거나 통모한 변제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2016. 3. 28.자 150,000,000원 금전지급행위는 기존 채무의 변제에 해당하고 2016. 3. 28.경 망 A은 E이나 F의 경제적 사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리

1)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한편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결국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2)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다른 사람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하여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위와 같은 송금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3)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기존 금전채무의 변제에 같음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한편 채무자가 특히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받은 액수 및 양도받은 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내지 채권양도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 내지 채권양도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8699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관련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사건 2016. 3. 28.자 150,000,000원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증여가 아닌 변제인 경우 E과 망 A이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변제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모두 원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먼저 이 사건 2016. 3. 28.자 150,000,000원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6. 3. 28. E이 망 A에게 150,000,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위 자기앞수표의 교부가 무상으로 망 A에게 증여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M, E의 각 증언에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자기앞수표는 E이 기존의 채무에 대한 변제조로 망 A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이 사건 2016. 3. 28.자 150,000,000원 금전지급행위가 E과 망 A이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행한 변제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변제가 E과 망 A간의 통모에 의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에 따라 이루어 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M, E의 각 증언에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망 A은 E에 대하여 2억 내지 4억 원의 기존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② 위 변제는 위와 같은 채권의 일부 금액에 대하여 이루어진 점, ③ E은 2016. 3. 28. 망 A에게 150,000,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자신의 처 및 아들 명의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합계 350,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준 점, ④ 위 변제 당시 망 A이 E이나 F의 경제적 사정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016. 3. 28.자 150,000,000원 금전지급행위는 망 A이 E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2억 내지 4억 원의 기존 채권의 본지에 따른 변제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2016. 3. 28.자 150,000,000원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이거나 통모한 변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사해행위의 요건에 관한 다른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성학